

제2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
제2차 본 회의(2016.11.7.)

조례안 심사 보고서



의회운영위원회

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: 2016. 9. 23.
- 나. 발 의 자: 김종두·표주숙·박희순·변상원·이홍희·강철우·최광열·
형남현·이성복·권재경·김향란 의원(11명)
- 다. 회부일자: 2016. 10. 18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6. 10. 26.

2. 개정이유

-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과 인용조문을 일체 정비하여
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상위 법령 조항 및 인용조문 정비(안 제1조, 제7조)
 - 결산승인에 관한 규정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2조 부분 삭제
 -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개정된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제84조에 맞게 개정
 -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·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
생략이 가능한 조항 삭제
- 나.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“ 4명 ”으로 구체화(안 제2조)
- 다.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정비

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과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거창군 결산검사의 위원 선임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,
-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형식이나 절차상 문제 및 상위 법령 등에는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